

제 호

입주자저축취급기관 지정서

1. 금융기관명 :

2. 대표자 성명 :

3. 본점 소재지 :

「주택법」 제56조제3항 및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5조제2항에 따라 귀 금융기관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취급하는 입주자저축취급기관으로 지정합니다.

년 월 일

국토교통부장관

관인